

징수유예
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**신청서**
 징수유예 기간 연장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----

신청인	상호(명칭)	사업자등록번호
	성명(대표자)	법인(주민·외국인)등록번호
	주소(사업장)	
(전화번호:)		

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이유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기간

20 . . . 부터 20 . . . 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 기한	분할납부 금액

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 귀하
한국환경공단

첨부서류	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

처리 절차

